

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

심 사 보 고

2002. 7. 22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 제출일자 : 2002년 7월 2일 회부일자 : 2002년 7월 3일

다. 상정일자 : 제20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 2002.7.12 :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증평출장소장 김재욱)

가. 제안이유

- 증평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은 주차공간을 확충하여
재래시장 이용편의와 중심부의 심각한 교통난을
해소하는 증평 주민의 염원 사항임.
- 증평지역은 도심에 1,000여개 점포와 1일 3,000여명이
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있으나 대형 할인매장 입점으로
상권이 급속도로 붕괴되는 등 주차시설이 부족하여
상인단체 및 지역주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
숙원사업임.

- 2002년도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비 447백만원 지원계획이 확정 통보되어 국고보조금 교부 조건인 지방비 (부지매입비 955백만원) 확보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함.
-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(공유재산의 취득)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 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구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재산의 취득

- 위 치 : 괴산군 증평읍 대동리 15번지 일원외 2개소
- 규 모 : 부지 2,967m²
- 주차면수 : 149면
- 용 도 : 주차장
- 사업기간 : 2002. 7 ~ 2002. 12
- 총사업비 : 1,492,000천원(재원 국비 447,000, 도비 1,045,000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상혁)

-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검토한 바
이는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사업

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재래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, 심각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,

○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,

증평의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요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